

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 결정 고시

군포시 금정동 728-8번지 일원 “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”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56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대행개시 결정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9월 29일

군 포 시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소규모재건축)
- 나. 명 칭 :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가. 법인의 명칭 :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
- 나. 사무소 소재지 : 군포시 당산로 167 시동 203호(금정동, 중앙연립)
- 다. 사무소 전화번호 : 031-346-4756

3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28-8번지 일원
- 나. 면 적 : 2,385.0㎡

4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가. 사업의 착수예정일 : 2024년 11월
- 나. 사업의 준공예정일 : 2026년 04월

5. 사업대행개시 결정을 한 날 : 2022년 09월 29일

6. 사업대행자

- 가. 법인의 명칭 :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(대표이사 김송규)
- 나. 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(저동1가, 대신파이낸스센터)
- 다. 사무소 전화번호 : 02-6362-1113

7. 대행사항

- 가. 시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
- 나. 설계·감리자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·계약·해지 또는 기존 용역계약 변경
- 다.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업무 지원
- 라. 일반분양분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
- 마. 조합 사업비 및 신탁차입 자금의 조달, 집행 및 관리

바. 공사대금 지출 등 자금의 집행·관리

사. 준공인가

아. 이전고시

자. 기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에서 정한 업무

8. 기타사항

가. 사업대행자는 대행사항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음

나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2조제4항에 따라 재산의 처분,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지 않은 계약 등 업무는 대행할 수 없음.